

## 2026년 공무원(경비) 공개채용 공고문

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.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합니다.

### 1. 채용개요

채용분야	채용형태	채용인원	담당업무
경비	공무직	1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계근무(CCTV, 순찰점검, 방범 및 화재 관리시스템 관제 등)</li> <li>- 위해요소 제거 및 재해 예방</li> <li>- 출입절차에 따른 내방객 안내</li> <li>- 차량출입 통제 및 물품의 반출·입 사항 점검</li> <li>- 기타 경비 관련 업무 등</li> </ul>

### 2. 근무조건

구분	해당내용
근무장소	영화진흥위원회 본사 경영본부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) * 단, 근무장소는 업무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근무형태	상시(주·야간 24시간), 4인 교대근무 ※ 세부 근무시간 추후 별도 안내
보 수	영화진흥위원회 내규에 따름
수습기간	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정식직원 임용 결정

※ 기타 근무조건은 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등 위원회 제규정 및 방침에 따름

### 3. 응시자격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인사구비서류를 허위·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자격기준 위반, 변칙채용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
9.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- 10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
-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채용예정일(2026.6.22.) 기준 정년(고령자 친화직종(경비) 만 65세)이 도래하지 않은 자

※ 학력, 전공, 성별 제한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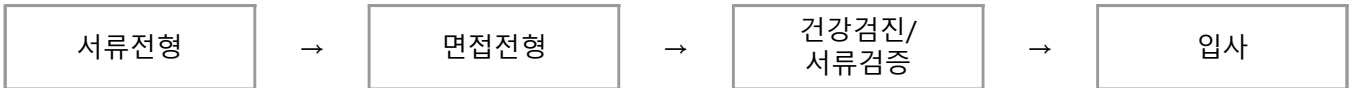
#### 4. 우대 및 가점사항(중복 적용 가능)

우대 및 가점 대상	우대 및 가점사항	적용단계
취업지원대상자 <sup>1)</sup>	동점자 발생 시 우대	면접전형
장애인 <sup>2)</sup>	만점기준 5점	모든 전형단계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
 2)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
#### 5.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

○ 전형일정

구분	일정	장소	결과발표	합격배수
지원서 접수	2026.5.7.(목)~5.22.(금)	-	-	-
서류전형	2026.5.29.(금)~6.2.(화)	온라인(서면)	2026.6.5.(금)	5배수
면접전형	2026.6.11.(목)	부산 본사	2026.6.15.(월)	1배수(최종선발)
입 사	2026.6.22.(월)	부산 본사	-	-

※ 합격배수는 최종 채용인원 기준이며,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대비 응시자가 미달하거나 부적격자(과락)가 제외되는 경우, 합격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

※ 전형별 일정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 6. 지원서 접수

구분	세부내용
접수기간	2026.5.7.(목)~5.22.(금) 18:00, 15일간
접수방법	온라인 접수(지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한 작성 및 제출)
접 수 처	지원서 접수 사이트 생성 후 기재 예정

#### 7.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기준

구분	세부내용
----	------

서류전형	평가방법	평가항목	배점	평가척도	고려사항
		입사지원서	30	4단계 (탁월/우수/보통/미흡)	직무역량, 기관 및 직무 이해도, 의사소통능력, 직업윤리, 문장기술 능력 및 논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자기소개서	70				
※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(작성항목 누락, 동일내용 반복, 기관명 오류 등 불성실 기재) 해당 시 결격 ※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사항(전공·학교·성별·나이·출신지역·결혼여부 등 명시) 해당 시 결격					
<b>합격기준</b> • 과락: 평가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• 합격: 평가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					
면접전형	평가방법	평가항목	배점	평가척도	내용
		전문성	30	4단계 (탁월/우수/보통/미흡)	• 직무수행 능력,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도 등
		협업 및 조직 이해능력	30		• 팀워크능력, 갈등관리능력, 의사표현능력 • 위원회 역할,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
		문제해결능력	20		• 창의적·논리적 사고, 문제인식 및 대안제시 등
		태도 및 자세	20		• 기본자질, 책임의식, 직업윤리, 조직 적응력 등
<b>합격기준</b> • 과락: 평가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• 합격: 평가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					

※ 위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ofic.or.kr>) 또는 지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함(별도 개별 통지 없음)

## 8. 제출서류

○ 제출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

\* 제출 일정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여부 확인 및 준비 필요

구분	제출서류		비고
입사 지원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</li> <li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</li> </ul>		지원서 양식 및 유의사항 준수
서류전형 합격 후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</li> <li>- 제출처에 영화진흥위원회 명시</li> </ul>	가점/우대사항 증빙 (해당자)
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증명서 1부</li> <li>-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부24 등 인터넷 발급분(3개월 이내 발급) 제출</li> <li>- 상이등급의 경우 상이등급 관련 증빙자료(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 확인서) 제출</li> </ul>	
면접전형 합격 후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</li> <li>교육사항 증명서(성적증명서, 수료증 등) 1부</li> <li>자격증명서 1부</li> </ul>	필수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 및 보험 자격득실 이력 1부</li> <li>- (보험 자격득실 이력)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자격이력내역서 중 1부</li> </ul>	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 증빙

- ※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 등의 경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- ※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함(진위확인 정보(QR코드 등) 인식이 가능하도록 출력). 단,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자격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※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양식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,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내용과 제출 증빙서류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, 허위 문서 등 제출서류가 증빙으로 부적합할 경우 채용전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용이며, 제출서류의 내용은 평가위원회에 공개되지 않음
- ※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(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포함)) 등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## 9. 기타사항

- 인사, 보수, 복무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.
- 입사 시 근무지는 영화진흥위원회 본사(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)입니다.
-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종료 후 역량평가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생년월일(나이), 성별, 학력(학교명, 전공, 학점), 가족관계(학력, 지위, 재산) 등의 사항과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서 수집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채용 전형 제외,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- \* 본인의 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, 혼인여부, 재산,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 등
-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임용 후에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·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.
-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- 최종합격자의 미입사·중도 퇴사 시 또는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시 예비합격자(최종면접 차순위자순)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수의 2배수 이내로 선정, 자격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전형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며,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recruit@kofic.or.kr)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접수기간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2일간,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간
- 접수방법 : 이의신청서 양식(붙임)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recruit@kofic.or.kr)으로 제출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,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질의 등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**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○ 채용공고문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경영본부 인사총무팀(051-720-471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5. 7.

영 화 진 흥 위 원 회